과천도시공사 개발업무규정

제정 2020.5.20. 규정 제38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, 기술연구, 조사설계, 발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개발사업"이란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사가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개발업무" 란 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, 기술연구, 조사설계, 기본 및 실시설계, 용역시행 및 관리,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- 3. "사업후보지" 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자하는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지구를 말한다.
- 4. "후보지선정"이란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후보지를 사업지구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사업지구" 란 조사된 사업후보지 중 공사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선정된 구획을 말한다.
- 6. "기본계획"이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토지 이용과 교통, 환경, 에너지 이용계획 등 제반시설에 관한 배치계획을 말한다.
- 7. "기술연구" 란 개발사업에 관한 신공법개발, 기술축적,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와 각종 기술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리, 관계법령 검토 등 사업개발 분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- 8. "기술조사" 란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행하는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검토(교통·환경·재해·교육·경관·정책 등 포함)를 말한다.

- 9. "조사설계" 란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기술조사, 사업성 판단, 현황측량, 토질조사, 기본계획(경관계획, 정책포함), 사전 환경성 검토,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, 사전 광역 교통체계 검토, 대중교통 시설계획 검토, 광역교통개선 대책, 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평가,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, 도로교통안전진단, 집단 에너지 공급 타당성검토, 에너지사용계획, 지구단위계획, 도시관리 계획·구역 결정,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말한다.
- 10. "기본설계" 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 사항, 계획 및 방침(주요한 설계기준, 구조물 형식 선정, 단면결정 등), 개략공정 계획,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.
- 11. "실시설계" 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시방 및 규격서, 공사비내역, 설계도서 작성 등 세부설계를 말한다.
- 12. "용역업무수행자" 란 개발업무에 수반하여 행하는 용역의 감독 및 그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13. "용역감독"이란 제12호의 용역업무수행자 업무중에서 도급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용역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14. "담당부서" 란 공사의 직제상 사업후보지선정, 보상, 공급, 공사 및 관련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사업시행 등)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구지정, 개발 및 실시 계획, 기술 연구, 기술조사, 조사설계 등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여 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모든 건설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사 규모·시기·형식 등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있다.
 - ③ 공사는 효율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적 정보처리 등에 따른 조사설계 및 건설공사 등의 관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.
- 제4조(홍보관 및 견본주택설치) 공사는 개발사업 및 실적의 홍보와 분양성 향상을 위하여 홍보관, 상설주택전시관 및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기술연구) 공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,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① 공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술업무의 발전과 원가 절감을 위한 공법개발,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, 사업 확정 등의 심의와

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단지개발 사업계획

제1절 개발가능지 조사 및 관리

- 제7조(지역분석) ① 담당 부서의 장은(이하 "담당부서장" 이라 한다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가능지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여 개발사업의 유형 및 규모의 결정, 후보지의 조사 및 선정,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.
 - 1. 사업성이 있는 지역
 - 2. 생활여건 및 간선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
 - 3.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저촉사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
 - ② 제1항의 지역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역별로 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사업타당성분석 및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파악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절 사업후보지 조사 및 선정

- 제8조(사업후보지 조사 및 선정) 담당부서장은 지역분석결과를 기초로 후보지를 조사·선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- 제9조(사업지구 지정제안) 담당부서장은 사업 후보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하여야한다. 지정된 지구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3절 개발 및 실시계획

- 제10조(개발계획 수립) ① 담당부서장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지구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용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시장성분석을 하여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 및 시

- 장성분석 등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개발용지 외에 현황보존녹지 및 시설물 등을 적절히 보존하거나 존치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영향평가 등)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수립·시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개발계획의 승인신청) 담당부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법령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.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13조(시행자 지정신청)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실시계획의 수립) 담당부서장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(이하 "실시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실시계획 승인신청 등) ① 담당부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실시계획을 변경(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제1항의 실시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 사업별로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관계기관 협의) ① 담당부서장은 지구지정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(사전협의를 포함한다)를 요청한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협의 요청한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관련기관의 장이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실시계획 승인) 담당부서장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 기 통보하여야 한다.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절 기술연구 및 조사설계

제18조(기술연구 등) 공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연구 및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전문가에 게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.

- 제19조(현황측량)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0조(문화재조사)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문화재 존부여 부를 조사하여야한다.
- 제21조(토질조사)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22조(설계업무 수행) 담당부서장은 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, 경관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,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·승인·면허신청을 하여야한다.

제5절 용역시행 및 관리

- 제23조(용역발주) 공사가 기본계획, 조사설계, 건설사업 관리 및 확정 측량 등의 용역(이하 "용역" 이라한다)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현장설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- 제24조(용역착수 등) ① 공사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에 정한 착수(예정)일에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여야한다.
 - ② 공사는 용역업무수행자를 임명하고, 용역감독은 이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 토록 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참여기술자) 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용역의 책임기술자 및 분야 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토록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한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 토록 하여야 한다.
- 제26조(하도급제한) 공사가 시행하는 용역은 수급인이 무면허업자 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, 하도급 통보 또는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.
- 제27조(용역관리 등) ① 수급인이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용역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는 인·허가 협의결과 및 사업지구의 여건 변동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용역의 과업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③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기한 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

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준공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.

- ④ 공사는 용역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중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다.
- 제28조(용역준공) 공사는 용역이 완료된 때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계약서, 과업지 시서, 그 밖에 약정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준공하여야 한다.

제3장 건설사업계획

제1절 건설사업계획

- 제29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담당부서장은 공사가 시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지구의 명칭 및 위치
 - 2. 대지의 면적
 - 3. 주택의 건설규모에 관한계획
 - 4. 생활여건시설의 설치계획
 - 5. 건설사업비
 - 6. 재원조달계획
 - 7. 사업기간
 -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수립 할 수 있다.
 - 1. 자금계획
 - 2. 사업비
 - 3. 분양성
 - 4. 경영수익
- 제30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담당부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 사업별로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1조(사업계획의 집행) 담당부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집행하여야하며, 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

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
제32조(사업계획의 변경) 담당부서장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절 설 계

- 제33조(설계종합계획 수립)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 종합계획을 사업 시행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신규설계의 개발계획
 - 3. 설계의 개선계획
 - 4. 추진일정계획
 -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34조(신규설계의 개발) ① 담당부서장은 건축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.
 - ② 신규설계는 자체설계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설계에 따라 개발 할 수 있다.
 - ③ 신규설계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지구에만 적용하는 설계 및 연면적 50제 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설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 - 1. 대상 및 필요성
 - 2. 기본방향
 - 3. 주요설계내용
 - 4. 개발의 방법
 - 5. 추진일정계획
- 제35조(설계업무의 수행) 담당부서장은 설계종합계획에 따라 단지계획, 계획설계, 실시설계 등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설계VE) ① 담당부서장은 효과적인 설계VE(가치분석)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시행하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한 경우 VE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설계의 개선) ① 설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
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개선의 대상 및 필요성
- 2. 성능, 시공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
- 3. 적용의 범위
- 4. 원가에 미치는 영향
- 5. 효과
- ② 제1항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입주자의 생활편의 제공
- 2. 생활공간의 활용 증대
- 3. 미관의 향상
- 4. 원가의 절감
- 제38조(자재 및 공법의 적용) ① 설계에는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재(KS인증)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 - ② 불가피하게 비 인증 KS자재를 사용 시에는 사전에 국가품질공인시험기 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신자재의 시험시공 또는 자재를 설계에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시험 시공 또는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지급자재의 선정) 지급자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품질보장을 위하여 제작과정을 확인하여야 하거나 제작완료 후 검사가 곤란 한 품목
 - 2. 시공의 통일을 요하는 품목
 - 3. 특허품 및 독과점 품목
 - 4.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품목
 - 5. 그 밖에 지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한 품목
- 제40조(지급자재의 조달의뢰) 담당부서장은 제39조에 의해 선정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조달 의뢰를 하여야한다.
- 제41조(제잡비율의 조정) 담당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잡비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지구별 공사여건을 고려한 제잡비율을 관계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제잡비에 적용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- 제42조(공사비 분석) ① 담당부서장은 설계, 자재 및 공법을 개선하거나 건설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에 투여되는 공사비를 분석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공사비 분석은 형별, 공종별 및 구조물별 등으로 준공 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발 주

- 제43조(발주의뢰 계획 수립) 담당부서장은 해당연도 개발사업의 발주의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사업지구의 분할)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 및 시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지구를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.
- 제45조(사업기간의 설정) 담당부서장은 사업 규모, 공사 현장의 여건, 사업 추진 방법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제46조(발주기준) 건설사업계획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설계, 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토목공사,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는 통합하여 발주한다.
 - 2. 전기공사, 통신공사, 가스공사 및 조경공사는 각각 분리하여 발주한다.
 - 3.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옥외기계공사, 대지면적이 330,000㎡이상인 사업 지구의 토목공사 또는 대지조성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할 사업지구의 토 목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
- 제47조(발주도서의 작성)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의 여건 조사자료
 - 2. 공구분할 및 사업기간의 설정자료
 - 3. 발주기준
- 제48조(발주의뢰) 담당부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심의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발사업의 발주를 의뢰하여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발사업의 승인, 심의통보를 받기이전이라도 발주를 의뢰할 수 있다.

- 제49조(현장설명) ①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이 발주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에 대한 개요
 - 2. 현장여건
 - 3. 사업기간
 - 4. 지급 자재의 범위
 - 5. 기성고 지불 횟수 및 방법
 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 현장설명을 할 때에는 계약부서 및 집행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.
 - ③ 현장설명은 사업의 규모, 성격에 따라 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